

2024 국공립 한뜰린어린이집 신입원아 모집공고

재단법인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서비스원에서 위탁운영하는 한뜰린어린이집에서는
신입원아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2023년 12월 5일

재단법인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서비스원 원장

I 모집개요

- 이용기간: 2024. 2. 1. ~ 2025. 2. 28.
- 정 원: 38명
- 접수기간: 2023년 12월 5일(화) 10:00 ~ 2023년 12월 15(금) 14:00
 - 1) 12월 15일(금) 14시 이후 보호자에게 전화 후 희망여부에 따라 입소확정 예정
 - 2) 입소확정자가 취소할 경우
 - 해당연령의 대기자 중 높은 순위의 입주민 자녀 우선확정

**「영유아보육법」 시행규칙 제29조 제3항 제8호를 준용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정원의 100분의70을 한뜰마을 5단지 내 거주하는 거주자 자녀가 우선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그 나머지는 거주자 자녀와 거주자가 아닌 자녀 구분 없이 일반적인 입소우선순위에 따라 입소자를 결정

- 동일점수의 경우 시스템 점수순서를 적용

3) 기간 내 접수 영유아가 모집인원보다 적을 경우에는 기간 이후 접수자에게 순위를 적용하여 확정예정

○ 모집인원: 2024학년도 15명

※ 2024학년도 채용여부 확인 후 잔여인원(33명기준) 모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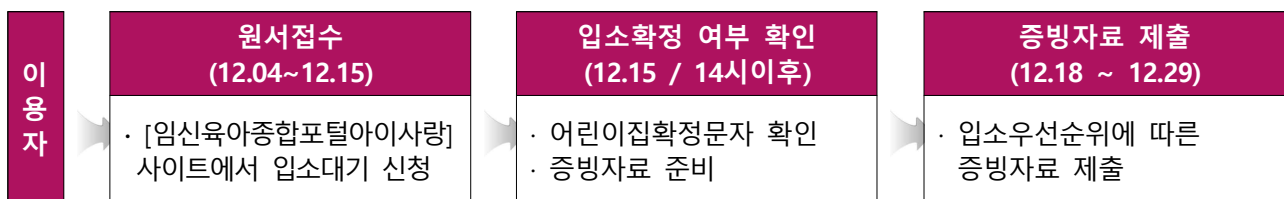
- 2024학년도 모집(입소: 2024년 3월)

연령	생년월일	모집인원
만0세	2023. 1. 1. ~ 2023. 12. 31.	8명
만1세	2022. 1. 1. ~ 2022. 12. 31.	3명
만2세	2021. 1. 1. ~ 2021. 12. 31.	4명
계		15명

○ 모집방법: 지원자격 및 각 호의 세부항목 기준에 따름

○ 접수방법: 입소대기신청사이트(아이사랑포털, www.childcare.go.kr)

II 접수일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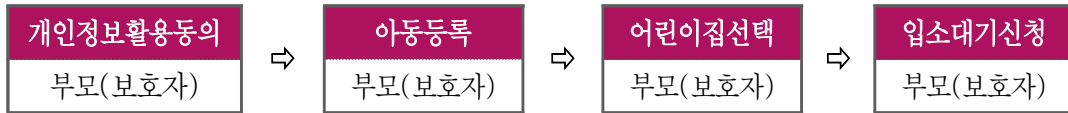


○ 접수기간: 2023년 12월 4일(월) 10:00 ~ 2023년 12월 15(금) 14:00

○ 접수방법: 임신육아종합포털아이사랑(<http://www.childcare.go.kr>) '입소대기' 신청

▶ 입소대기 신청방법:

부모(보호자)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(<http://www.childcare.go.kr>) 접속하여 신청



※ 임신육아종합포털에서 입소대기신청을 위한 개인정보활용동의를 반드시 최초 1회 진행
(모바일에서는 개인정보활용 동의 불가)

※ 개인정보활용동의 이후에는 아이디, 비밀번호 로그인으로 입소대기 메뉴이용 가능

※ **입주민의 경우 하단에 표기된 '무상임대'란에 체크해야 우선입소권 부여**

▶ 임신육아종합포털접속 → (아동등록) → 한플린어린이집 검색 → 대기신청

※ 입소대기시스템 관련 문의는 아이사랑헬프데스크(1566-3232 단축번호 1번)으로 문의

○ 입소확정

2023년 12월 15일(금) 14:00 ~ 보호자와 통화 후 희망여부에 따라 입소확정 진행

○ 입소 증빙자료 제출기한

2023년 12월 18일(월) 10:00 ~ 17:00 (점심시간 12:00 ~ 13:00) 부터

2023년 12월 29일(금) 10:00 ~ 17:00 (점심시간 12:00 ~ 13:00) 까지

- 보건복지부 입소우선순위의 증빙서류 '지원자격 및 구비서류' 참조

- 제출장소 :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7(한뜰마을5단지 관리동)

(한뜰린어린이집)

○ 유의사항

1) 입소대기신청은 반드시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에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.

※ 미리 로그인 시 새로 고침 후 입소대기 신청해야 함

2) 입소 결정 확정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입소가 가능합니다.

※ 입소우선순위 증빙서류 미제출 시 우선순위 적용 취소됨

※ 증명서류에 대한 확인 후 필요에 따라 추가 증빙서류 등을 요구할 수 있음

3) 입소우선순위 해당 여부 및 증빙서류는 어린이집 '입소일' 을 기준으로 판단하며, 증빙서류는 2023 보육사업안내(보건복지부)에서 정한 서류만 인정합니다.

4) 정해진 기한 내에 입소우선순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

방법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, 어린이집 입소대기신청이 취소되오니 이점
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
※ 또한, 3월 신학기 기준 입학관련서류를 재요청할 수 있습니다.

○ 기타 문의사항

- 국공립 한뜰린어린이집 ☎(044)903-8400
- 입소대기시스템관련 문의(ARS : 1566-3232, 단축번호 1번)

III 지원자격

○ 지원자격 및 구비서류

순위	구 분	증빙서류
1순위	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(법정)	시스템 자동연계
	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 대상자의 자녀	시스템 자동연계
	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(중위소득의 50%이하)의 자녀	시스템 자동연계
	「장애인복지법」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정도에 해당하는 자(장애부모*)의 자녀 *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 별표 1의 장애정도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-「장애인복지법」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자가 형제자매인 영유아	시스템 자동연계
	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	시스템 자동연계
	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전몰자(제3호), 순직자(제5호, 제14호, 제16호), 상이자(제4호, 제6호, 제12호, 제15호, 제17호)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*의 자녀 *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3의 1급 내지 3급까지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	○ 국가유공자 (유족 또는 가족)확인서 ○ 가족관계증명서
	부모가 모두 취업중이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영유아 -취업적용 원칙- 원칙적으로 아동의 부와 모가 모두 일(취업)을 하거나 구직 중인 가구의 자녀 - 취업의 기준 : 주 15시간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 - 한부모 가구인 부 또는 모가 취업중이거나 취업을 준비중인 경우 맞벌이 자격 인정 - 휴직자(육아휴직자 포함)의 경우 맞벌이 자격 인정 - 무급가족종사자(배우자가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무급으로 일하는 자)는 취업중인 자에 해당하지 않음	근로자 ○ 재직증명서 ○ 위촉계약서 ○ 근로계약서 중 1부(필수) 와 ①~⑤ 중1부 (필수) 제출 ①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(근로복지공단) ② 직장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(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) ③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서(국민연금공단) ④ 소득세납세증명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(재직기관) ⑤ 고용·임금 확인서(재직기관) 또는 소득금액증명원(세무서) ※고용·임금 확인서의 경우 최소 3개월 이상 급여이체내역 확인 대 학 (원) 생 ○ 재학증명서 * 원격대학(방송통신대학, 사이버 대학등) 및 휴학중인 경우 불인정 자 공 ○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기타 사업자격

순위	구 분	증빙서류	
		통	증명 가능 서류(필수)
		일반	○ 소득금액증명원(세무서) ○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(세무서) 중1부(필수)
		신규자영업자	※ 사업자등록증 상 등록일자 1년 미만인 자영업자 ○ 소득신고 증빙서류(세무서 접수증 등) ○ 사업장의 매출장부*와 매출증빙자료(신용카드 매출전표, 현금영수증 등) 중 1부 필수 * 매출증빙자료가 없거나 매출장부와 매출 증빙 자료가 불일치하는 경우는 대체서류로 인정불가 * 부부공동사업자인 경우 서류상 확인이 가능해야 함
		농어업종사자	○ 농(어)업인 확인서 ○ 농(어)업경영체 등록증명서 ○ 어선원등본 중 1부 필수 ○ 매출계약서 ○ 판매증명서 중 1부 필수
		취준자	○ 직업교육훈련 참여확인서, 수료증 ○ 직업능력개발 훈련 수강증(고용노동부지정 훈련시설 여부 명시) ○ 각종 취업준비프로그램 참여 확인서 ○ 구직등록확인증과 구직활동 증명서류 ※ 직업교육훈련 수료증은 3개월 이상 과정으로 입소일 기준 6개월 이전까지 인정(서류상 확인) ※ 구직등록확인증은 어린이집 입소일 직전 최소 3개월 이상 구직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. 다만, 직전 퇴직일과 입소일이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입소일 직전 최소 3개월 구직등록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구직등록확인증 상 7일 이내 구직등록을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(서류상 확인) ※ 구직활동 증명서류는 최근 1개월이내의 면접확인서 또는 구직활동내용(워크넷) 출력물 제출
	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또는 영유아 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* 2자녀 가구의 경우, 3월 신학기 입소 시, 첫째 자녀가 만 9세 또는 초등학교 3학년에 도달한 경우 해당하지 않음	예술인	예술인 활동 증명서
			○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※ 입소일 기준으로 영유아 2자녀 가구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. * 태아는 자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태아에 대한 입소대기 신청은 불가. 다만 둘째 자녀 이하를 임신 중으로 입소일 전에 출산 예정인 경우 임신 중인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 가능(출산예정일이 명시된 진단서 등 제출)
			○ 임신 중과 예정일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
			○ 주민등록등본(결혼이민자 및 귀화자가 등본상 기재)

순위	구 분	증빙서류
	다문화 가족*의 영유아 *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「국적법」제2조부터 제4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 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*「국적법」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 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	○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 사본 ○ 결혼이민자 중 「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 위에 관한 법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 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제출(외국에서 15년 이상 거주하였음을 증명) ○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경우: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서(출입국 관리사무소) 또는 외국인 기본증명서 등 다문화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
	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 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 이 없는 영유아	○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(단,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 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야 함.)
	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	
2순위	기타 한부모가족	○ 가족관계증명서 ○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증명서류
	조손가족	○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증명서류
	입양된 영유아	○ 입양확인서
	가정위탁 보호아동	○ 가정위탁보호확인서
	동일 어린이집 재원 중인 형제·자매	○ 형제·자매 재원확인 - 단, 재원아동 형제·자매의 경우, 3월 신학기 입소 시 첫째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경우 해당하지 않음
3순위	1,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영유아	

IV 기타사항

○ 구비서류가 미비하거나 접수기간이 지나면 접수가 불가하므로 서류를 완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○ 연령별 모집인원 내에서만 입소가 확정됩니다. 단, 모집인원보다 접수인원이 많을경우 각 호의 세부항목 순서에 따라 선발합니다.

* 위 내용 외 별도의 입소자 결정이 필요한 경우, 보육사업안내(2023년, 입소자결정)에 따름.

입소 우선 순위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연령별 모집인원에 따라 입소가능여부가 확정됩니다.

○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전화로(문의시간 10:00~18:00)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
- ☎ (044) 903-8400 (국공립 한뜰린어린이집)
- 입소대기시스템 관련 문의(1566-3232 단축번호 1번)